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596호

「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

설·추석 연휴기간 동안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의 편의증대와 안전을 등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정책을 총괄·조정하는 ‘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’를 특별교통대책 수립기관에 추가하고, 설·추석 연휴기간에 구성·운영중인 ‘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교통관련기관에 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’를 추가하여 소관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2조제3호)

나.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

1)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·운영 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의 공무원을 포함하고, 제2차관 소속 개정 직제\*를 반영함(안 제18조)

\*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-1170호(‘22.12.9),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-1523호(‘22.12.12)

2) 상황실장의 경우 주간은 실·국의 국장 및 정책관으로, 야간은 과장급으로 구성함(별표 1)

- 3) 교통관련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관련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(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교통정책총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
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
- 팩스 : 044-201-5579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(전화 044-201-3786, 37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